

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개정

調 査 部

보건사회부고시 제81—47호

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(보건사회부고시 제16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.

1981. 8. 1

보 건 사 회 부 장 관

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

제 1 조 (목적) 이 고시는 불량식품제조와 제품의 품질저하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법 제23조의 3의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영업 및 품목허가의 적절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상업종 등) ①영업허가기준의 적용대상업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.

1. 과자류제조업
2. 엿류제조업
3. 어육연제품제조업
4. 장류제조업
5. 다류제조업
6. 두부류제조업
7. 보존음료수제조업

②품목허가기준의 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의 품목으로 한다.

1. 통조림, 병조림 제조업의 품목
2. 청량음료제조업의 품목
3. 인스탄트 식품제조업의 품목
4. 식품가공업의 품목(임가공 형태는 제외)

제 3 조 (영업허가기준)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한 영업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다.

1. 제 1 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고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(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해당하는 영업)
2. 제 1 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고 시설이 전자동기제화 되어 있는 경우(두부류제조업에 한함)
3. 전량수출 및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합작 또는 기술도입하는 경우(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해당하는 영업)
4. 전량수출의 경우(보존음료수 제조영업)

제 4 조 (품목허가기준)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한 품목의 허가는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

1. 통조림 또는 병조림 제조업의 품목허가

- 가. 과일류는 과실을 주성분으로 한 째이나 과실을 주성분으로 하여 이를 절단된 상태로 고형물이 있는 것 또는 과실을 주성분으로 한 밀 상태로 된 것.
- 나. 채소류는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여 채소의 원형이 남아 있는 것.
- 다. 육류는 육류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것.
- 라. 곡류는 곡류를 주성분으로 가공한 것은 곡류원형의 고형물이 있는 것.
- 마. 어패류는 어패류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것.
- 바. 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통조림 또는 병조림으로 식품고유의 보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것.

2. 청량음료 제조업의 품목허가

- 가. 탄산음 함유한 음료(광물질과 탄산가스를 인공으로 가하여 만든 음료도 이에 포함)의 경우
- 나. 유음료인 경우에는 생유 또는 우유를 주원료로 한 경우
- 다. 유산균음료에 사용하는 유제품의 주원료는 탈지분유와 탈지유등으로 하여야 하고 유고형분의 총합량은 1%이상으로 한 경우
- 라. 과·채류 또는 곡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경우

3. 인스탄트식품의 제조품목허가는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.

- 가. 조리시간, 운반에 용이하고 보존성이 높으며 식생활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.
- 나. 성분배합비율, 제조방법, 성상등이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4. 식품가공업의 품목제조허가

- 가. 일반적인 가공식품류
순대류, 햄버거류, 인조육류, 절입통닭류 등의 경우
- 나. 단순 혼합가공식품류
미수가루등 단순히 식품의 원료를 혼합 가공하는 경우

부 칙

①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이 고시 시행이전에 허가받은 품목허가는 1981.9.30까지 이 고시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.